

제 287회 정례회

I·SEOUL·U  
너와 나의 서울

#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

2019. 6.

 서울시50플러스재단  
Seoul 50 Plus Foundation

#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

## 1. 개정이유

-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안내(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-3904, '19.03.29)를 반영하여 정관을 개정·보완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- 재단 정관 용어 일괄 정비(안 제8조제3항, 제10조제1항)
  - 근로자이사 → 노동자이사로 용어 일괄 정비
- 노동자이사 임면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9조제3항)
  - 노동자이사 임면 절차에 관한 사항 명시
- 자구수정(안 제8조제1항, 제10조제1항)
  - 임원에 대한 시장 임면사항 명확화 등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제안근거

-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(정관)
-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제39조(정관의 변경)
-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안내(서울시 공기업담당관-3904호, '19.03.29.)
- 법령 입안·심사 기준(법제처)

### 나. 추진절차 및 일정

구분	시의회 상임위 보고	→	이사회 의결	→	서울특별시 시장 승인	→	보건복지부 허가	→	시행
일정	'19.6.17.(월)		7월 중		7월 중		7월 중		7월 중

## 【추진절차 관련 근거】

### 1. 시의회 상임위 보고

：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(정관)

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(이하“시장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야 한다.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고,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2. 시의회 상임위 보고 → 이사회 의결 → 시장 승인 → 보건복지부 허가

：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제39조(정관의 변경)

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,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## 4. 첨부

- 붙임1.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안내 공문
- 붙임2. 신·구조문 대비표
- 붙임3. 현행 재단법인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
- 붙임4. 개정 재단법인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

# 【붙임1】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안내 공문

“소리자는 스톡공제 40%, 판매자는 수수료 0%” 경당은 게트케이!

I·SEOUL·U  
서울특별시

## 서울특별시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안내

1. 노동정책담당관-3880(2019.3.28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「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(조례 제7044호, 2019.3.28.공포·시행)」 제9조에 의거 「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붙임과 같이 개정(조례명칭 변경, 근로자이사제→노동자이사제, 근로자이사→노동이사)됨을 안내하오니, 기관은 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**2019. 7.31.한 개정조치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[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개요]

가. 시 행 일 : 2019. 3.28.

나. 주요골자 : 근로자이사제→노동자이사제, 근로자이사→노동자이사, 근로→노동

다. 개정근거 :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9조 (조례 제7044호)

라. 행정사항 : 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**2019.7.31.한 관련 규정 개정**

- 정관, 이사회운영규정,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, 선거관리규정 등

붙임 관련공문 및 서울시보 등 5부, 끝.

서울특별시



특자기관 시 주관부서, 출연기관 시 주관부서, 서울시투자기업, 서울특별은행, 서울특별증권, 서울특별시사회복지재단

06/09

실무사무관 최미영

국정담당관 김민철

국정담당관 고광현

첨삭자

시행 공기업담당관-3904 (2019-03-29)

접수 경영지원팀-2453( 2019.04.02. )

우 0450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

/ <http://finance.seoul.go.kr/publicenterprises>

전화 2133-0772

팩스 2133-0864

/y7157@seoul.go.kr

/ 공개()

#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신·구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<b>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</b>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사장 1명</li> <li>2. 대표이사 1명</li> <li>3. 이사 6인 이상 10인 이내(이사장 및 대표이사, 근로자 이사 1명을 포함한다.) &lt;개정 2019.02.28.&gt;</li> <li>4. 감사 2인</li> </ol>	<p><b>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</b>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사장 1명</li> <li>2. 대표이사 1명</li> <li>3. 이사 6인 이상 10인 이내(이사장 및 대표이사, <b>노동자 이사</b> 1명을 포함한다.)&lt;개정 2019.02.28.&gt;<b>&lt;개정 2019.07.00.&gt;</b></li> <li>4. 감사 2인</li> </ol>
<p><b>제9조(임원의 임면)</b>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, 이사장·대표이사·선임직 감사·선임직 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. 단 조례 또는 정관에 의해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&lt;개정 2018.08.21&gt;</p> <p>② &lt;생략&gt;</p> <p>③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</li> <li>2.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&lt;신설 2016.12.29.&gt;</li> </ol> <p>④ 감사는 인생이모작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1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⑤ 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해임할 수 있다.&lt;신설 2018.08.21.&gt;</p>	<p><b>제9조(임원의 임면)</b>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, 이사장·대표이사·선임직 감사·선임직 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<b>임면</b>한다. 단 조례 또는 정관에 의해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&lt;개정 2018.08.21&gt;<b>&lt;개정 2019.07.00.&gt;</b></p> <p>② &lt;생략&gt;</p> <p><b>③ 노동자이사는 임·후보 등록신청을 한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며,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,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.&lt;신설 2019.07.00.&gt;</b></p> <p><b>④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&lt;개정 2019.07.00.&gt;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1. 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&lt;개정 2019.07.00.&gt;</b></li> <li><b>2.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&lt;신설 2016.12.29.&gt; &lt;개정 2019.07.00.&gt;</b></li> </ol> <p><b>⑤ 감사는 인생이모작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1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. &lt;개정 2019.07.00.&gt;</b></p> <p><b>⑥ 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해임할 수 있다.&lt;신설 2018.08.21.&gt;&lt;개정 2019.07.00.&gt;</b></p>

현 행	개 정
<p><b>제10조(임원의 임기)</b>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, 공개모집, 근로자 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&lt;개정 2018.08.21.&gt;&lt;개정 2019.02.28.&gt;</p>	<p><b>제10조(임원의 임기)</b>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<b>노동자</b>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, 공개모집, <b>직원</b> 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&lt;개정 2018.08.21.&gt;&lt;개정 2019.02.28.&gt; <b>&lt;개정 2019.07.00.&gt;</b></p>

##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

제정 2015.11.06.

개정 2016.07.11.

개정 2016.12.29.

개정 2018.08.21.

개정 2019.02.28.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인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「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법인은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**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**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.

〈개정 2018.08.21〉

**제4조(사업의 범위)**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50플러스 캠퍼스 운영
2.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·개발 및 실태조사
3.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, 사회공헌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, 문화·여가생활 지원, 상담
4.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·보급
5. 장년층 관련 시설 지원 및 종사자 교육
6. 장년층 사업 관련 민·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발굴, 연계
7. 장년층 신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, 출판 및 캠페인
8.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
9.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**제5조(수익사업)**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**제6조(대행사업)** ① 재단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.

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.〔본조 신설 2018.08.21〕

**제7조(광고방법)** 재단의 설립·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광고는 시 또는 당해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. 다만 경미한 사항의 광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.

## 제2장 임원 및 직원

**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**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1명
2. 대표이사 1명
3. 이사 6인 이상 10인 이내(이사장 및 대표이사, 근로자 이사 1명을 포함한다.)  
〈개정 2019.02.28.〉
4. 감사 2인

**제9조(임원의 임면)**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, 이사장·대표이사·선임직 감사·선임직 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. 단 조례 또는 정관에 의해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〈개정 2018.08.21〉

②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, 이사장과 나머지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
③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
2.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〈신설 2016.12.29.〉

④ 감사는 인생이모작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1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.

⑤ 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해임할 수 있다.〈신설 2018.08.21.〉

**제10조(임원의 임기)**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



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, 공개모집, 근로자 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08.21.><개정 2019.02.28.>

② 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개정 2018.08.21>

③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.

④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.

**제11조(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**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서울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<개정 2018.08.21>
2.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<개정 2018.08.21>
3.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<개정 2018.08.21>

② 서울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.<개정 2018.08.21>

1. 경영전문가
2. 사회복지, 평생교육 등 사업관련 전문가, 경제관련단체의 임원<개정 2018.08.21>
3.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
4. 공인회계사
5.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<개정 2018.08.21>
6.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

④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.

⑤ 성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,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%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.<신규 2019.02.28.>

⑥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 시기·해당 기관 임원직위의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없으며, 이 경우 이사회 참여 대상자

에게 임원의 공개모집 참여제한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.<신규 2019.02.28.>

**제12조(임원 후보의 추천절차)** ① 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결원 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  
<개정 2018.08.21>

② 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 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임원의 직무)**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 제3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.<개정 2018.08.21>

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,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18.08.21>

**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**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4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5.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
6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② 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[본조신설 2018.08.21]

**제15조(직원의 임면)** ① 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.

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·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.

③ 직원의 임면,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.

**제16조(임·직원의 복무)** 임·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

재단의 내규로 정한다.

**제17조(임직원의 겸직제한)** 재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상임임원은 시장의,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**제18조(임직원의 보수)** ① 재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.  
②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6.7.11.><개정 2018.08.21>

**제19조(비밀누설의 금지 등)** 재단의 임·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**제20조(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)**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.<개정 2018.08.21>

**제21조(대리인의 선임)**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### 제3장 조직 및 정원

**제22조(조직 및 정원)** ①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 및 정원규정으로 정한다.

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### 제4장 이사회

**제23조(설치 및 구성)**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**제24조(의결사항)**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회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3.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4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5. 조직,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6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7.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<개정 2018.08.21>
8.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
9.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
10. 법령, 조례,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11.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

**제25조(이사회 의 소집)**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한다.

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

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

⑤ 이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.<신설 2018.08.21>

**제26조(의결방법)**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③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27조(서면결의)**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에서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 할 수 있다.

<개정 2018.08.21><개정 2019.02.28.>

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은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08.21>

**제28조(이사회 참여제한)**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1.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**제29조(의사록)** 이사장은 이사회 의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

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기명·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위 원 회

**제30조(설치)**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.

**제31조(운영)**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.

## 제6장 재산 및 회계

**제32조(재산)**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설립 후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·건물 등의 부동산
3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

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시의 출연금,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, 위탁사업수입금, 법인사업수입금, 기타수입금 등으로 구성하며,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.

**제33조(재산의 관리)** ① 재단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교환,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34조(기금)**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<개정 2018.08.21>

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<개정 2018.08.21>
2. 중앙정부의 지원금<개정 2018.08.21>
3.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<개정 2018.08.21>

4. <삭제 2018.08.21>
  5. <삭제 2018.08.21>
  6.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<개정 2018.08.21>
- ③ 재단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신설 2018.08.21>
  - ④ 재단은 기금의 운영·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<개정 2018.08.21>
  - ⑤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.<신설 2018.08.21>
  - ⑥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<신설 2016.7.11.>

**제35조(사업연도)**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

**제36조(사업계획과 예산)**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 2018.08.21>

**제37조(결산)**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08.21>

1. <삭제 2018.08.21>
2. <삭제 2018.08.21>
3. <삭제 2018.08.21>

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 2018.08.21>

**제38조(손익금의 처리)** ① 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.

②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,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.

③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,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.

## 제7장 보 칙

- 제39조(정관의 변경)** ①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08.21>
- ②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<개정 2018.08.21>
- 제40조(해산)**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제41조(잔여재산의 귀속)**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서울특별시 또는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.<개정 2016.07.11.>
- 제42조(시행규정)**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하되, 그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된 것으로 정관 또는 규정에서 위임하는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의 내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.<개정 2019.02.28.>
- ② 직제 및 정원규정을 제정 또는 개·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부 칙

- 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재단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사업연도)**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 연도말 까지로 한다.
- 제3조(사업계획 등)**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재단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4조(경과조치)** 제8조제3항과 관련하여 최초 대표이사 선임시까지의 대표이사의 직무는 복지기획관이 대행한다.
- 제5조(조례 또는 직제 개·폐 등에 의한 적용)** 제8조의 당연직 이사는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직제의 개·폐 등으로 변경된 경우, 그 직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 (2016. 7.11.)

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(2016.12.29.)**

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(2018. 8.21.)**

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(2019. 2.28.)**

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

〈별지〉

### 기본재산 목록

(단위 : 원)

구 분	출 연 자	금 액	비 고
계		700,000,000	
현 금	서울특별시	700,000,000	설립출연

##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

제정 2015.11.06.

개정 2016.07.11.

개정 2016.12.29.

개정 2018.08.21.

개정 2019.02.28.

개정 2019.07.00.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인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「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법인은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**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**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.

〈개정 2018.08.21〉

**제4조(사업의 범위)**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50플러스 캠퍼스 운영
2.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·개발 및 실태조사
3.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, 사회공헌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, 문화·여가생활 지원, 상담
4.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·보급
5. 장년층 관련 시설 지원 및 종사자 교육
6. 장년층 사업 관련 민·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발굴, 연계
7. 장년층 신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, 출판 및 캠페인
8.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
9.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**제5조(수익사업)**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**제6조(대행사업)** ① 재단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.

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.〔본조 신설 2018.08.21〕

**제7조(광고방법)** 재단의 설립·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광고는 시 또는 당해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. 다만 경미한 사항의 광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.

## 제2장 임원 및 직원

**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**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1명
2. 대표이사 1명
3. 이사 6인 이상 10인 이내(이사장 및 대표이사, 노동자 이사 1명을 포함한다.)  
〈개정 2019.02.28.〉〈개정 2019.07.00.〉
4. 감사 2인

**제9조(임원의 임면)**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, 이사장·대표이사·선임직 감사·선임직 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. 단 조례 또는 정관에 의해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〈개정 2018.08.21〉〈개정 2019.07.00.〉

②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, 이사장과 나머지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
③ 노동자 이사는 입·후보 등록신청을 한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며,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,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.〈신설 2019.07.00.〉

④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〈개정 2019.07.00.〉

1. 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〈개정 2019.07.00.〉

2.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〈신설 2016.12.29.〉〈개정 2019.07.00.〉

⑤ 감사는 인생이모작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1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.〈개정 2019.07.00.〉

⑥ 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해임할 수 있다.<신설 2018.08.21.><개정 2019.07.00.>

**제10조(임원의 임기)**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**노동자**이 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, 공개모집, **직원** 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08.21.><개정 2019.02.28.><개정 2019.07.00.>

② 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개정 2018.08.21>

③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.

④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.

**제11조(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**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서울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<개정 2018.08.21>
2.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<개정 2018.08.21>
3.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<개정 2018.08.21>

② 서울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.<개정 2018.08.21>

1. 경영전문가
2. 사회복지, 평생교육 등 사업관련 전문가, 경제관련단체의 임원<개정 2018.08.21>
3.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
4. 공인회계사
5.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<개정 2018.08.21>
6.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

④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.

⑤ 성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,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%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.<신규 2019.02.28.>

⑥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이사회 심의·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 시기·해당 기관 임원직위의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없으며, 이 경우 이사회 참여 대상자에게 임원의 공개모집 참여제한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.<신규 2019.02.28.>

**제12조(임원 후보의 추천절차)** ① 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결원 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08.21>

② 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 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임원의 직무)**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 제3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.<개정 2018.08.21>

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,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18.08.21>

**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**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4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5.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
6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② 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[본조신설 2018.08.21]

**제15조(직원의 임면)** ① 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.

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·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.

③ 직원의 임면,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.

**제16조(임직원의 복무)** 임·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.

**제17조(임직원의 겸직제한)** 재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상임임원은 시장의,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**제18조(임직원의 보수)** ① 재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.

②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6.7.11.><개정 2018.08.21>

**제19조(비밀누설의 금지 등)** 재단의 임·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**제20조(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)**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.<개정 2018.08.21>

**제21조(대리인의 선임)**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### 제3장 조직 및 정원

**제22조(조직 및 정원)** ①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 및 정원규정으로 정한다.

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### 제4장 이 사 회

**제23조(설치 및 구성)**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**제24조(의결사항)**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3.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5. 조직,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6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7.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<개정 2018.08.21>
8.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
9.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
10. 법령, 조례,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11.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

**제25조(이사회 소집)**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한다.

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

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

⑤ 이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.<신설 2018.08.21>

**제26조(의결방법)**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③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27조(서면결의)**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에서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 할 수 있다.

<개정 2018.08.21><개정 2019.02.28.>

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은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08.21>

**제28조(이사회 참여제한)**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1.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**제29조(의사록)** 이사장은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기명·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위 원 회

**제30조(설치)**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.

**제31조(운영)**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.

## 제6장 재산 및 회계

**제32조(재산)**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설립 후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·건물 등의 부동산
3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

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시의 출연금,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, 위탁사업수입금, 법인사업수입금, 기타수입금 등으로 구성하며,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.

**제33조(재산의 관리)** ① 재단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교환,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34조(기금)**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<개정 2018.08.21>



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<개정 2018.08.21>
  2. 중앙정부의 지원금<개정 2018.08.21>
  3.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<개정 2018.08.21>
  4. <삭제 2018.08.21>
  5. <삭제 2018.08.21>
  6.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<개정 2018.08.21>
- ③ 재단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신설 2018.08.21>
- ④ 재단은 기금의 운영·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<개정 2018.08.21>
- ⑤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.<신설 2018.08.21>
- ⑥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<신설 2016.7.11.>

**제35조(사업연도)**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

**제36조(사업계획과 예산)**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 2018.08.21>

**제37조(결산)**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08.21>

1. <삭제 2018.08.21>
2. <삭제 2018.08.21>
3. <삭제 2018.08.21>

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 2018.08.21>

**제38조(손익금의 처리)** ① 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.

②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,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.

③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,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.

## 제7장 보 칙

**제39조(정관의 변경)** ①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08.21>

②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<개정 2018.08.21>

**제40조(해산)**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**제41조(잔여재산의 귀속)**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서울특별시 또는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.<개정 2016.07.11.>

**제42조(시행규정)**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하되, 그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된 것으로 정관 또는 규정에서 위임하는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의 내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.<개정 2019.02.28.>

② 직제 및 정원규정을 제정 또는 개·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재단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사업연도)**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 연도말 까지로 한다.

**제3조(사업계획 등)**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재단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4조(경과조치)** 제8조제3항과 관련하여 최초 대표이사 선임시까지의 대표이사의 직무는 복지기획관이 대행한다.

**제5조(조례 또는 직제 개·폐 등에 의한 적용)** 제8조의 당연직 이사는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직제의 개·폐 등으로 변경된 경우, 그 직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**부 칙 (2016. 7.11.)**

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(2016.12.29.)**

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(2018. 8.21.)**

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(2019. 2.28.)**

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〈별지〉

### 기본재산 목록

(단위 : 원)

구 분	출 연 자	금 액	비 고
계		700,000,000	
현 금	서울특별시	700,000,000	설립출연